

<별표 26> <개정 2010.12.29>

## 종합금융회사의 자산·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

(제8-61조제2항 관련)

구분	평가대상 항목	평가기준
자산	1.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(자산) (여신성가지급금, 미지급 금으로 대체처리된 부실 외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실예상액을 차감</li> <li>○ 평가액=재무상태표상 총당금 차감전 금액*-손실 예상액**</li> <li>*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 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(채권재 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 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 율)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</li> <li>**손실예상액 = 고정분류여신의 20%+회수의문분류 여신의 50%+추정손실분류여신의 100%</li> </ul>
	2.증권  가. 주 식  (1) 시장성이 있는 경우  (2) 시장성이 없는 경우  나. 채권(사채,국·공채) 및 그 밖의 증권(집 합투자증권 등)  (1) 시장성이 있는 경우  (2) 시장성이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가(기준일의 증가, 다만, 기준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증가)</li> <li>- 최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</li> <li>- 시가(기준일의 증가, 다만, 기준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증가)</li> <li>*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협 회’에서 공표하는 ‘상품채권별 시가평가 기준수익 률’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</li> <li>-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. 다만,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등인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</li> <li>*손실예상액=‘고정’의 20%+‘회수의문’의 50% +‘추정손실’의 100%</li> </ul>

구분	평가대상 항목	평가기준
	<p>3.업무용 고정자산</p> <p>가. 토 지</p> <p>나.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</p>	<p>-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*</p> <p>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 준액(다만,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)*</p> <p>*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(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 기준)으로 평가 가능</p>
	4.비업무용 고정 자산	-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기타충당금 적립잔액을 차감
	5. 무형자산	<p>- 골프, 콘도, 체육시설 회원권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</p> <p>*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,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 가능</p> <p>- 기타의 무형자산 : 장부가액</p>
	6.자산건전성분류대상인 그 밖의 자산 (가지급금,미수금)	<p>-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실예상액을 차감</p> <p>○ 평가액 = 장부가액 - 손실예상액</p> <p>* 손실예상액 = “고정”분류여신의 20% + “회수의문” 분류여신의 50% + “추정손실”분류여신의 100%</p>
	7.상기 이외의 그 밖의 자산 (예치금,현금,자산처분미수금,미결제환대, 이연자산을 제외한 그 밖의 자산)	-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
부채	1. 퇴직급여부채	- 전직원 일시 퇴직시 요지급액으로 평가
	2. 상기 이외의 부채 (발행어음,표지어음,CMA,팩토링어음,담보부대출어음,차입금,콜	-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

구분	평가대상 항목	평가기준
	머니, 환매조건부채권매도, 증금채, 미결제환차, 기타부채, 제충당금)	
주식 사항	1. 지급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정지급보증 : 자산건전성분류결과를 토대로 실제 손실발생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= “고정”의 20% + “회수의문”의 50% + “추정손실”의 100%</li> </ul> </li> <li>- 미확정지급보증 :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= 지급보증금액 × 지급보증 유형별 신용환산율 ×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른 순채무 발생예상률(고정 20%, 회수의문 50%, 추정손실 100%)</li> </ul> </li> </ul>
	2. 대출약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정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= 약정금액 × 약정 유형별 신용환산율 × 약정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손실발생예상률(고정 20%, 회수의문 50%, 추정손실 100%)</li> </ul> </li> </ul>